

# 모자가구 여성가장의 빈곤과 고용\*

김혜원\*\*

## I. 서론

2008년과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된 시기이다. 이번 에 경험한 경기불황은 임시, 일용직 중심의 고용조정으로서 과거 외환위기의 조정 방식 과 달랐다. 또한 고용조정에 있어서 남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 여성 중 심 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용 감소 집단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여 성 가구주의 실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혼 자녀를 키우는 여성가장의 실직과 이에 따른 여성가장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여성가구주의 어려움은 경제위기 상황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누 누 이 지적되었듯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 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 바 있다.

여성가구주 특히 모자가구의 여성가장에 대한 기존 정부정책은 복지 중심의 저소득 한 부모가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이들에 대한 지원의 기본법 역할을 하 고 있는데, 기본법을 살펴보면 주로 한부모 보호시설 운영이나 아동양육비 지원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고용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강조를 넘어서는 포괄 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여성가구주의 실직과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추진 원칙은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복지의 연 계의 원칙은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개혁 과정에서 그 유효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향후 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 이 글은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 「여성가장 가구의 고용과 빈곤 연구」(2009)의 일부이다.

\*\* 한국고원대학교 교수(hwkim@knue.ac.kr).

그런데 선진국의 개혁은 여성가구주에 대한 관대한 복지급여 제공이라는 역사적 유산 위에서 이를 좀더 고용과 연계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존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급여 측면에서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을 고용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복지급여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새로운 정책의 방향은 복지 측면을 상향시키면서 동시에 고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노동시장적 특성과 모자가구의 빈곤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모자가구의 경우 빈곤과 고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 가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II장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 내의 다양한 유형의 집단을 구분하고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이 어떤 집단이며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모자가구의 빈곤 실태에 대해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제IV장에서는 무배우 모자가구의 빈곤에 고용 상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제V장에서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언급한다.

## II. 정책 대상의 식별

### 1. 개념 구분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모자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구란 부와 미혼자녀, 또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자녀가 미혼인 경우에 한정했으므로 한부모의 연령이 65세 미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때 자녀의 연령 제한은 없다. 둘째, 여성 한부모가구란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여성 한부모가구는 배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배우 여성 한부모가구와 무배우 여성 한부모가구로 구분한다. 셋째, 모자가구는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면서 미혼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이때 모는 무배우자와 유배우자로 구분된다. 정책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것이 이들 가구이다. 넷째, 여성가구주 가구는 여성 한부모가구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여성가구주 가구 내에는 별거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동거하는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

이다. 즉, 여성 한부모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부분집합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집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정책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자가구, 부자가구는 한부모가구 중에서 미혼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이때 한부모가구는 반드시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둘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배우자가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한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에서 유배우 여성가구주 가구를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여성이 가구주가 되어 가구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은 남성의 경제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비록 남자 배우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능력이 떨어지므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지원이 긴급하지 않은 집단에 재정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여성 한부모가구를 정책 대상으로 보는 것에도 유사한 논란이 있다. 여성 한부모가구 내의 미혼자녀가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배우자의 문제와 동일하게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부모가구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 대상의 규모를 추정해야 한다.

<표 1> 모자가구와 여성 한부모가구

자녀 기준	배우자 기준	배우자 소득 활동 및 기여	용어 정리		
			모자가구	여성 한부모 가구	
미혼, 18세 미만	비동거	없음			유배우 모자가구
		있음			무배우 모자가구
미혼, 18세 이상	비동거	없음			유배우 여성 한부모 가구
		있음			무배우 여성 한부모 가구
	이혼, 사별				

## 2. 여성가구주 가구 및 여성 한부모가구의 규모

우선 한부모가구의 규모를 살펴보자. 한부모가구의 규모 현황을 확인하는 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05년 조사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1,588만 가구 중에서 여성 한부모가구는 108만 가구, 남성 한부모가구는 28만 가구이다(표 2 참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한부모가구에는 별거 중인 유배우자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유배우자 가구를 제외하면 무배우 한부모가구는 104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한다(표 3 참조). 1인 가구를 제외하면 전체 가구수는 1,272만 개이며 이 중에서 한부모가구는 8.2%를 차지한다. 무배우 여성 한부모가구와 무배우 남성 한부모가구는 각각 82만 가구, 22만 가구이며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전체 2인 이상 가구 중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 한부모가구는 1.8%를 차지한다.

<표 2>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수도 제시되어 있는데 65세 미만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256만 가구로서 82만 가구의 규모로 추정되는 여성 한부모가구의 3배 가량에 이른다.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가구주 가구에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59만 가구가 포함되며 미혼가구 80만 가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배우 여성 한부모가구에 포함된 총인구수는 몇 명일까? 인구수는 가구원수에 가구수를 곱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추정하면 208만 명으로 계산된다. 유배우자인 여성 한부모가구를 포함할 경우 인구수로 275만 명 정도인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

<표 2> 여성가구주 가구와 모+미혼자녀, 부+미혼자녀 가구

(단위 : 가구, %)

	전체	미혼	배우자있음	사별	이혼
여성가구주(65세 이상 포함)	3,485,220	809,857	624,815	1,548,102	502,446
(비율)	(100.0)	(23.2)	(17.9)	(44.4)	(14.4)
여성가구주(65세 미만 한정)	2,555,952	802,426	591,663	677,683	484,180
(비율)	(100.0)	(31.4)	(23.1)	(26.5)	(18.9)
모+미혼자녀 가구*	1,083,020	133,234	263,716	427,209	258,861
(비율)	(100.0)	(12.3)	(24.4)	(39.4)	(23.9)
부+미혼자녀 가구**	286,923	9,218	64,148	73,886	139,671
(비율)	(100.0)	(3.2)	(22.4)	(25.8)	(48.7)

주 : \* 모+미혼자녀 가구는 세대구성의 구분에 따라 2세대 가구로서 자녀가 결혼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모+미혼자녀 가구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이유는 별거의 경우로 해석됨. 별거는 불화로 인한 별거도 있지만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도 포함함.

\*\* 부+미혼자녀 가구는 모+미혼자녀 가구의 설명을 참조.

자료 : <http://www.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에 의거하여 계산됨.

<표 3> 무배우 한부모가구 가구수(2005년)

(단위: 가구, %)

	전체	미혼	사별	이혼
무배우 여성 한부모가구	819,304	133,234	427,209	258,861
무배우 남성 한부모가구	222,775	9,218	73,886	139,671
전체	1,042,079	142,452	501,095	398,532

자료: <http://www.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에 의거하여 계산됨.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76%인 점을 감안할 때 208만 명으로 계산된다. 전체 총인구 4,574만 명 중에서 여성 한부모가구의 인구수 비율은 4.5% 정도이다. 여성 한부모가구는 평균 2.5명 정도의 가구원 총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미혼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모자가구의 규모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모+미혼자녀 가구는 자녀의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하지 연령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모자가구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하는 모자가구란 여성 한부모가구 중에서 자녀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2007년 기준 가계동향조사의 총가구수는 1,452만 가구이며 이 중에서 모자가구는 46만 가구로 추정된다.<sup>1)</sup> 가계동향조사상의 모자가구 46만과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여성 한부모가구 108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인구주택총조사상 여성 한부모가구 내에 18세 이상 미혼자녀를 가진 가구가 62만 가구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모자가구의 세분화 : 정책 대상의 식별

가계동향조사에서 식별되는 모자가구에는 이질적인 두 집단이 섞여 있다. 하나는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이혼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 비동거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비동거상태의 가구는 유배우 가구이며 배우자 없음으로 응답한 가구는 무배우 가구이다. 그 규모를 비교해 보면 무배우 모자가구는 19만 가구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모자가구의 40% 정도이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와 비동거상태를 유지하는 유배우 모자가구로서 27만 가구, 60%를 차지한다(표 4 참조).

1) 보건복지부에서 한부모지원법 대상 모자가구의 모수로 삼는 46만 가구는 이러한 숫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4> 2007년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한 가구유형별, 배우자 유무별 비중

(단위:백 가구, %)

	있음(동거)	있음(비동거)	없음	전 체
노인가구	5899 (38.51)	386.98 (2.53)	9033.3 (58.97)	15319 (100.0)
모자가구	0 (0.00)	2691.8 (59.12)	1861.2 (40.88)	4553 □(100.0)
맞벌이가구	31800 (100.00)	0 (0.00)	0 (0.00)	31800 □(100.0)
기타	59705 (63.87)	5705.4 (6.10)	28071 (30.03)	93482 □(100.0)
전 체	97404.1	8784.12	38965.6	145154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모자가구 중에서 60%가 혼인상태를 유지하면서 비동거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경우가 대부분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 정의한 배우자의 유기(遺棄)에 의한 비동거라고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남편 또는 아내의 직장 문제로 인해 부부가 합의 하에 비동거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아닐까? 이것은 직접 조사된 변수로 확인되지 못한다.

<표 5> 가구유형별, 배우자 유무별, 가구주 취업 여부별 사적이전소득액 비교

(단위: 원)

가구유형	배우자 유무 등	가구주 취업 여부	평균값	표준편차
노인가구	동거□	비취업	359,950.87	706,291.42
		취업	222,759.16	488,762.74
	비동거□	비취업	426,284.69	652,576.67
		취업	149,517.39	406,984.80
모자가구	유배우□	비취업	336,348.48	568,205.48
		취업	129,371.14	480,491.55
	비동거□	비취업	<b>2,358,237.92</b>	1,920,618.16
		취업	<b>1,075,814.00</b>	1,550,444.48
	무배우□	비취업	268,252.82	641,230.51
		취업	111,354.36	408,737.11
맞벌이가구	동거	취업	29,849.04	249,690.16
기타□	동거□	비취업	185,168.89	589,782.93
		취업	45,456.00	310,764.84
	비동거□	비취업	<b>1,706,536.43</b>	2,096,036.94
		취업	546,900.91	1,579,465.27
	무배우□	비취업	303,102.39	704,315.80
		취업	81,422.66	570,752.69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하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구소득 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의 크기이다.

모자가구 중에서 비동거 유배우가구는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액이 158만 원에 이르는데 비해서 무배우가구는 13만 원에 불과하다. 좀더 세분하여 여성이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액이 236만 원에 달하며, 일하고 있을 때도 100만 원이 넘는다(표 5 참조). 이와 비교할 때 무배우 모자가구가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11만 원에 불과하다.

비취업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액 평균이 30만 원을 약간 넘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볼 때 비동거 유배우 모자가구의 사적이전소득액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비동거 유배우 모자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이 높은 이유는, 남성배우자의 유기로 인한 상황이기보다는 주로 남성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해 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지 않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사적이전소득의 분포에 차이가 존재한다(표 6 참조). 모가 비취업상태인 경우 10만 원 미만의 이전소득을 받는 가구는 6.2%에 불과하지만, 모가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38.8%에 달한다. 100만 원 이상 받는 가구는 비취업모의 경우 83%, 취업모의 경우 40.7%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모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상당수가 부부의 동의하에 비동거상태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소득 공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비동거 유배우 모자가구 중 비취업모 가구 중 상당수는 활발한 사적이전소득이 존재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판단된다.

<표 6> 유형별 모자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분포

(단위: 백 가구, %)

배우자 상태	모의 취업상태	사적이전소득						전 체
		없음	10만 원 미만	10~30만 원	30~100만 원	100~200만 원	200만 원 이상	
비동거 유배우	비취업	40.6 (3.8)	25.4 (2.4)	9.2 (0.9)	104.6 (9.9)	361.1 (34.0)	520.6 (49.0)	1061.4 (100.0)
	취업	493.0 (30.2)	140.1 (8.6)	53.9 (3.3)	280.6 (17.2)	317.6 (19.5)	345.1 (21.2)	1630.3 (100.0)
	소 계	533.5	165.5	63.1	385.2	678.7	865.7	2691.8
무배우	비취업	189.3 (65.3)	18.0 (6.2)	16.7 (5.8)	38.3 (13.2)	18.5 (6.4)	9.0 (3.1)	289.9 (100.0)
	취업	1142.7 (72.7)	175.7 (11.2)	89.4 (5.7)	106.7 (6.8)	48.3 (3.1)	8.5 (0.5)	1571.3 (100.0)
	소 계	1332.1	193.7	106.2	145.1	66.8	17.4	1861.2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이에 비해 비동거 유배우 모자가구 중 취업모 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남성 배우자의 도움이 없는 가구가 상당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무배우 모자가구의 경우 84%의 모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거의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집중적인 지원 대상은 이들 무배우 모자가구임을 알 수 있다.

### Ⅲ. 무배우 모자가구의 빈곤

본 장에서는 무배우 모자가구를 중심으로 해당 가구의 빈곤 특성을 2007년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배우 모자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유배우 모자가구 전체가 정책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배우 모자가구 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이 거의 없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중심으로 수집되었던 가계조사의 가구소득은 이후 농촌지역 및 자영업자 및 무직자 가구가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가구를 포괄하여 풍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농촌 및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도시지역에 한정하여 소득 및 빈곤의 문제를 검토한다. 가구소득은 가구 규모를 감안하여 균등화된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단순화를 위해 관측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나누어서 균등화된 소득을 구하였다.

<표 7> 가구유형별 월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비교

(단위 : 원)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무배우 모자가구	978,579.32	927,396.90	923,540.20	1013,464.70
유배우 모자가구	1,529,437.10	1,193,139.64	1,555,615.43	1,251,878.28
부자가구	1,208,579.61	1,025,489.23	1,254,520.01	1,192,107.23
맞벌이가구	1,965,408.65	1,374,470.91	2,130,683.98	1,556,144.70
홀벌이 유배우가구	1,441,646.02	1,088,234.12	1,572,225.83	1,238,883.01
기타	1,631,093.88	1,549,784.58	1,701,515.63	1,740,598.52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배우 모자가구의 월평균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은 97만 원으로서 맞벌이가구의 196만 원, 기타가구의 163만 원 수준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유배우 모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52만 원으로서 기타가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배우 모자가구는 시장소득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아서 공적이전 소득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시장소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무배우 모자가구에서 모가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균등화된 가구소득은 2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모가 취업했을 경우 가구소득은 98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표 8 참조).

<표 8> 무배우 모자가구의 소득 비교

(단위 : 원)

	취업여부	평균값	표준편차
시장소득	비취업	248,893.88	411,921.32
	취업	982,112.06	697,298.60
가처분소득	비취업	448,378.52	425,391.37
	취업	1,027,477.32	645,159.22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9> 가구유형별 상대빈곤

(단위 : 백 가구, %)

	100% 이하	100 ~ 130%	130 ~ 150%	150 ~ 200%	200 ~ 300%	300% 이상	전 체
무배우 모자가구	362.46 (23.84)	263.00 (17.30)	117.91 (7.76)	341.05 (22.43)	253.04 (16.64)	182.75 (12.02)	1520.2 (100.0)
유배우 모자가구	283.63 (12.11)	155.38 (6.63)	119.39 (5.10)	335.38 (14.31)	603.27 (25.75)	845.95 (36.11)	2343 (100.0)
부자가구	116.82 (16.79)	58.481 (8.40)	44.667 (6.42)	151.44 (21.76)	139.03 (19.98)	185.43 (26.65)	695.87 (100.0)
맞벌이가구	441.07 (2.53)	568.36 (3.26)	515.07 (2.95)	2094.6 (12.01)	5629.6 (32.29)	8186.9 (46.96)	17436 (100.0)
홀벌이가구	2,559.8 (9.37)	1868.6 (6.84)	1802.6 (6.60)	5334.1 (19.53)	8996.4 (32.94)	6747.5 (24.71)	27309 (100.0)
기타	6,666.8 (11.98)	3071.6 (5.52)	2246.3 (4.04)	6398.9 (11.50)	13606 (24.45)	23654 (42.51)	55644 (100.0)
전 체	10430.6	5985.46	4845.9	14655.4	29227.6	39802.6	104948

주 : \* 무배우 모자가구가 15만 2천 가구에 불과한 이유는 가구소득 정보가 누락된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임. 이 표는 절대 가구수보다는 비율(%)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된다.

소득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최저생계비 대비 상대소득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욕구 대비 소득 비율(*income-to-needs ratio*)라고 불린다. 2007년 기준의 가구 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상대소득수준을 계산하여 무배우 모자가구가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홀벌이가구, 기타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비중이 9%, 12%이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 수준의 가구가 22%, 2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이에 비해 무배우 모자가구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가구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23%에 달하며 150% 이하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유배우 모자가구 중에서도 빈곤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대비 130% 이하 가구는 전체 유배우 모자가구 중 18% 수준이며, 130~150% 이하 가구는 5% 정도 존재한다.

무배우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 가구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내 지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력수준에서나 고용형태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학력수준이나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무배우 모자가구 내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배우 모자가구의 가구주는 고졸 이하 자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이 낮은 것은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친다. 모자가구 가구주 내에서도 학력수준별 차이는 빈곤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모자가구 여성가구주의 경우 고졸자의 고용률은 80% 수

<표 10> 무배우 모자가구 여성가장의 학력수준별 취업형태

(단위: 백 가구, %)

	사무상용	기능상용	임시일용	자영업	비취업	전체	비율
초졸	0 (0.00)	23.586 (100.00)	0 (0.00)	0 (0.00)	0 (0.00)	23.586 □	(1.55)
중졸	0 (0.00)	91.151 (48.11)	43.921 (23.18)	0.8598 (0.45)	53.533 (28.25)	189.47 □	(12.46)
고졸	174.12 (17.39)	393.66 (39.31)	46.483 (4.64)	200.27 (20.00)	186.87 (18.66)	1001.4 □	(65.87)
전문대졸	24.727 (16.07)	33.91 (22.04)	7.6843 (4.99)	69.286 (45.03)	18.273 (11.88)	153.88 □	(10.12)
대졸	46.179 (41.33)	40.12 (35.90)	0 (0.00)	22.793 (20.40)	2.6532 (2.37)	111.75 □	(7.35)
대학원졸	40.123 (100.00)	0 (0.00)	0 (0.00)	0 (0.00)	0 (0.00)	40.123 □	(2.64)
전 체	285.153	582.428	98.088	293.208	261.33	1520.21*	(100.0)

주: \* 18만 2천 가구가 아닌 15만 2천 가구인 이유는 가구주가 비취업자인 경우가 제외되기 때문임.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준인 데 비해 대졸자는 97%이다. 직종 차원에서도 고졸자는 기능직에 많이 분포하는 데 비해서 대졸자는 사무상용직에 많이 분포한다(표 10 참조).

모자가구 내에서 여성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아지는 단조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고졸자는 150만 원의 소득을 누리는 데 비해서 대졸자와 대학원졸업자는 각각 215만 원, 310만 원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표 11 참조). 소득분포의 측면에서도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고졸자의 비중은 30%에 육박하는 데 비해서 대졸자는 3%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로 넓혀 잡을 경우 대졸자의 빈곤율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0%에 달하며 이는 고졸자의 40%와 크게 다르지 않다(표 12 참조).

〈표 11〉 무배우 모자가구의 학력수준별 월 가처분소득 비교

(단위 : 원)

	평균값	표준편차
초졸	1,020,763.54	653,525.90
중졸	1,117,440.47	769,644.76
고졸	1,484,743.94	1,240,592.76
전문대졸	1,570,139.01	1,433,245.96
대졸	2,153,588.40	2,152,042.14
대학원졸	3,110,367.13	1,028,232.01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12〉 무배우 모자가구의 학력수준별 소득분포

(단위 : 백 가구, %)

	100% 이하	100 ~ 130%	130 ~ 150%	150 ~ 200%	200 ~ 300%	300% 이상	전 체
초졸	10.263 (43.51)	0.9281 (3.94)	1.9109 (8.10)	5.0906 (21.58)	5.3931 (22.87)	0 (0.00)	23.586 (100.0)
중졸	59.38 (31.34)	68.257 (36.03)	21.538 (11.37)	21.543 (11.37)	13.03 (6.88)	5.7171 (3.02)	189.47 (100.0)
고졸	263.16 (26.28)	137.18 (13.70)	78.357 (7.82)	256.57 (25.62)	180.54 (18.03)	85.609 (8.55)	1001.4 (100.0)
전문대졸	26.14 (16.99)	26.916 (17.49)	4.912 (3.19)	28.459 (18.49)	25.136 (16.33)	42.318 (27.50)	153.88 (100.0)
대졸	3.518 (3.15)	29.717 (26.59)	11.195 (10.02)	22.334 (19.99)	28.294 (25.32)	16.687 (14.93)	111.75 (100.0)
대학원졸	0 (0.00)	0 (0.00)	0 (0.00)	7.0611 (17.60)	0.6479 (1.61)	32.414 (80.79)	40.123 (100.0)

주 : 무배우 모자가구가 15만 2천 가구에 불과한 이유는 가구소득 정보가 누락된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임. 이 표는 절대 가구수보다는 비율(%)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13> 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중:6세 미만 영유아 가구

(단위: %)

소득분위	무배우 모자가구	유배우 모자가구	무배우 부자가구	유배우 부자가구	맞벌이가구	유배우 홀벌이가구	전 체
1	18.2	30.6	0.0	24.9	26.2	25.3	25.0
2	26.0	17.7	20.1	6.0	7.4	10.0	14.5
3	21.1	12.7	2.0	0.0	9.9	6.1	10.4
4	12.7	13.6	11.4	0.0	6.1	7.1	10.2
5	22.8	13.8	5.3	0.0	7.1	6.0	11.0
6	-	13.1	0.0	0.0	6.6	5.0	8.2
7	-	16.2	0.0	0.1	5.2	6.9	7.1
8	-	7.8	0.3	0.0	5.8	5.0	4.7
9	-	10.9	0.0	0.0	4.7	3.9	4.9
10	17.3	10.0	0.0	0.0	3.9	2.7	8.5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지출 측면에서도 모자가구가 겪는 애로 요인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모자가구가 겪는 대표적인 애로점은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필수적인 비용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나타난다.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10분위 소득층에서 가구유형별로 가처분소득 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중을 비교해 보면, 무배우 모자가구에서 보육교육비용 부담이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소득 10~30%대에서 무배우 모자가구는 가처분소득의 20%를 자녀 보육교육비용 부담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절대 수준액으로 비교하면 하위 2분위에서 무배우 모자가구는 28만 원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유배우 홀벌이가구는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14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가구주의 취업 여부에 따른 보육교육비용을 비교해 보면 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의

<표 14> 가구주 취업여부에 따른 소득 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중 : 영유아 가구의 경우

(단위: %)

	무배우 모자가구	유배우 모자가구	무배우 부자가구	유배우 부자가구	맞벌이가구	유배우 홀벌이가구	전 체
비취업	10.1	13.9	0.0	24.7	-	15.5	9.2
취업	29.6	15.8	4.4	0.0	5.9	6.9	2.5
전 체	19.8	14.8	4.4	12.3	5.9	11.2	5.8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15> 가구유형별 빈곤율

(단위:백 가구, %)

	100% 이하	100 ~ 130%	130 ~ 150%	150 ~ 200%	200 ~ 300%	300% 이상	전 체
<b>비취업</b>							
무배우 모자가구	185.3 (70.91)	37.538 (14.36)	13.535 (5.18)	11.74 (4.49)	7.0135 (2.68)	6.1996 (2.37)	261.33 (100.0)
유배우 모자가구	136.1 (14.87)	49.941 (5.46)	48.447 (5.29)	137.94 (15.08)	202.66 (22.15)	339.88 (37.15)	914.97 (100.0)
기타	3089.8 (40.77)	690.8 (9.12)	371.36 (4.90)	806.18 (10.64)	1243.6 (16.41)	1376.3 (18.16)	7578 (100.0)
소 계	185.3 (70.91)	37.538 (14.36)	13.535 (5.18)	11.74 (4.49)	7.0135 (2.68)	6.1996 (2.37)	261.33 (100.0)
<b>취업</b>							
무배우 모자가구	177.16 (14.07)	225.46 (17.91)	104.38 (8.29)	329.31 (26.16)	246.02 (19.54)	176.55 (14.02)	1258.9 (100.0)
유배우 모자가구	147.53 (10.33)	105.44 (7.38)	70.938 (4.97)	197.44 (13.83)	400.6 (28.05)	506.07 (35.44)	1428 (100.0)
무배우 부자가구	1.3125 (7.62)	0 (0.00)	5.7872 (33.58)	7.648 (44.38)	1.9325 (11.21)	0.5539 (3.21)	17.234 (100.0)
맞벌이가구	567.18 (2.10)	707.21 (2.62)	681.06 (2.53)	2764.3 (10.25)	7740.2 (28.70)	14512 (53.80)	26972 (100.0)
기타	3668.5 (6.87)	3425.1 (6.42)	3069.5 (5.75)	9120.4 (17.09)	16788 (31.46)	17296 (32.41)	53367 (100.0)
소 계	177.16 (14.07)	225.46 (17.91)	104.38 (8.29)	329.31 (26.16)	246.02 (19.54)	176.55 (14.02)	1258.9 (100.0)

주: 무배우 모자가구가 15만 2천 가구에 불과한 이유는 가구소득 정보가 누락된 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임. 이 표는 절대 가구수보다는 비율(%)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어려움이 무배우 모자가구에서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 수준으로 비교해보면 취업 무배우 모자가구는 한 달에 33만 원 가량의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데 비해서 홑벌이 유배우가구는 16만 원을 지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비취업 무배우 모자가구는 9만 5천 원 정도를 지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가구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만 있는 가구에서 취업한 무배우 모자가구는 가구소득의 30%에 이르는 금액을 영유아의 보육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배우 홑벌이가구는 7%에 불과한 비용을 보육에 지출하고 있다.

무배우 모자가구의 경우 필수 지출 요인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구 가처분소득은 지출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더 부족한 실정이다.

## IV. 고용과 빈곤의 상호작용

### 1. 취업 여부와 빈곤

취업 여부는 빈곤 여부에 강한 영향을 준다. 무배우 모자가구의 모가 비취업상태일 경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가능성이 70%에 달하는 데 비해서 모가 취업할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가능성이 14%로 감소한다(표 15 참조). 취업 여부에 따라 빈곤가능성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홑벌이가구에서도 가구주가 실직할 경우 빈곤가능성은 40% 수준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의 가능성이 그보다 훨씬 높다.

가구빈곤 및 저소득의 문제는 자녀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녀가 미취학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절대빈곤율이 40%에 이르는 데 비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녀가 있을 경우 20%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낮은 자녀의 연령과 자녀 양육의 책임 그리고 취업 유지의 어려움이 중첩되면서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상태로 빠진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을 가진 모자가구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해당 가구의 낮은 고용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미취학 아동을 가진 모자가구의 고용률은 48%로서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경우의 89%, 중학교 자녀를 가진 경우의 81%와 비교할 때 크게 낮다.<sup>3)</sup>

<표 16> 무배우 모자가구의 자녀 구성별 소득분포

(단위: 백 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비취업률
	100% 이하	100 ~ 130%	130 ~ 150%	150 ~ 200%	200 ~ 300%	300% 이상	
미취학	<b>39.61</b>	17.38	9.30	14.95	16.15	2.62	45.27
초등	<b>21.66</b>	21.20	7.15	20.05	14.18	15.76	10.81
중고등	<b>23.92</b>	13.86	8.29	25.78	18.56	9.60	18.80

자료: 2007년 「가계동향조사」.

3) 자녀가 중고생 이상일 경우 고용률이 다시 떨어지는 비선형적 관계가 관측된다. 이것은 가구주의 연령효과 및 미혼자녀 부분취업에 의한 소득효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표 17> 무배우 모자가구의 공적, 사적 이전소득 비교

(단위 : 원)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미취학	415,406.91	420,822.61	140,544.58	298,139.21
초등	154,781.13	410,135.10	115,905.66	426,266.41
중고등	103,762.94	298,209.78	168,046.90	581,954.93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빈곤 집단의 경우 공적, 사적 이전소득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전소득은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순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을 가진 모자가구에 14만 원의 사적이전소득과 40만 원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이 제공되고 있다. 초등학교 아동 이상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15만 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사적이전소득의 값은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을 가진 모자가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전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낮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 연령대별로 확인되는 이전소득과 고용률 사이의 상충관계는 가구소득 수준별로도 확인된다. <표 18>에서는 소득수준별로 소득내 이전소득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소득 가구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 이전소득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비율이 100~130% 수준으로 되면서 빠르게 감소한다.<sup>4)</sup> 소득지원이 집중되는 최저생계비 100%

<표 18> 소득수준별 가처분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중과 고용률

(단위 : %)

소득 구간	이전소득 비중	고용률
100% 이하	45.6	29.1
100 ~ 130%	25.7	85.7
130 ~ 150%	25.4	94.9
150 ~ 200%	14.3	95.5
200 ~ 300%	18.6	97.4
300% 이상	10.3	97.6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4) Di Tella and MacCulloch(2002)는 가족 보험으로서의 사적이전소득과 사회 보험으로서의 공적이전소득의 관계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모자가정의 경우 이전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 매우 높아서 가족이 보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부분적으로 도와주게 된다면 가족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의 모자가구 지출수준 증가는 비공식적 이전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지원을 늘릴 근거를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하 가구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집단의 여성 고용률은 30%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최저생계비 100~130% 집단의 경우 취업률은 85%에 이른다. 두 소득집단의 실질적인 소득 차이는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취업률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로 확인된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 일을 통한 자활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보인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강력한 근로저해요인에 의해 기초보장 수급가구인 모자가구의 자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100~130% 소득대의 가구이다. 이들 가구의 여성들은 <표 19>에서 보듯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일용직과 생산, 서비스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0% 이하 소득대에 비해 고용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지원제도 내에서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밖에 없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정책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근로유인의 저해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빈약한 지원에 의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집단으로 확인된다.

<표 19> 소득수준별 고용지위

(단위:백 가구, %)

	고용형태				
	사무상용	기능상용	일용	자영업	비취업
100% 이하	10.202 (3.58)	106.25 (18.24)	39.939 (40.72)	20.767 (7.08)	185.3 (70.91)
100 ~ 130%	35.573 (12.47)	135.96 (23.34)	34.737 (35.41)	19.191 (6.55)	37.538 (14.36)
130 ~ 150%	26.351 (9.24)	54.407 (9.34)	1.7943 (1.83)	21.826 (7.44)	13.535 (5.18)
150 ~ 200%	98.323 (34.48)	121.03 (20.78)	14.364 (14.64)	95.593 (32.60)	11.74 (4.49)
200 ~ 300%	66.983 (23.49)	117.24 (20.13)	3.1694 (3.23)	58.634 (20.00)	7.0135 (2.68)
300% 이상	47.722 (16.74)	47.543 (8.16)	4.0841 (4.16)	77.198 (26.33)	6.1996 (2.37)

자료 : 2007년 「가계동향조사」.

## 2. 실직 위험과 빈곤 위험

앞 절의 분석은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다. 비취업상태나 빈곤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입직과 실직, 빈곤 유입과 빈곤 탈출의 동태적 과정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비취업상태나 빈곤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연결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무배우 모자가구가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보자.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배우 모자가구의 실직확률은 3% 수준이며 입직확률은 17% 수준이다. 가장 일반적인 집단인 유배우 홑벌이가구의 경우 실직확률 측면에서는 무배우 모자가구와 유사하다. 하지만 입직확률은 유배우 홑벌이가구가 모자가구보다 훨씬 높다. 모자가구 가장의 고용률이 유배우 홑벌이가구 가장의 고용률보다 낮은 이유는 실직확률보다는 입직확률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자가구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직 측면보다는 입직 측면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배우 모자가구의 빈곤 위험에 대해 살펴보자. 무배우 모자가구가 분기간에 빈곤선을 전후로 하여 빈곤상태를 탈출할 확률은 22%이며 빈곤상태로 유입될 확률은 9%이다. 다른 유형의 가구와 비교할 때 빈곤탈출확률이 가장 낮고 빈곤유입확률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인 무배우 부자가구의 10%와 거의 차이 없는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는 빈곤유입확률이 무배우 모자가구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하며 빈곤탈출 확률은 2배 이상 높다. 유배우 홑벌이가구는 빈곤유입확률이 무배우 모자가구의 절반 이하로서 빈곤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고 빈곤탈출확률도 30% 이상 높다. 이처럼 무배우 모자가구는 빈곤에 빠질 확률도 높으며, 한 번 빠질 경우 빈곤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가구유형과 실직 위험

(단위: %)

	취업 ⇒ 비취업(실직)	비취업 ⇒ 취업(입직)
무배우 모자가구	3	17
유배우 모자가구	5	15
무배우 부자가구	2	14
맞벌이가구	1	-
유배우 홑벌이가구	3	30

자료: 2007년 1/4분기부터 2008년 2/4분기까지의 연결패널자료.

〈표 21〉 가구유형과 빈곤 위험

(단위: %)

	빈곤 ⇒ 비빈곤(빈곤탈출)	비빈곤 ⇒ 빈곤(빈곤유입)
무배우 모자가구	22	9
유배우 모자가구	36	5
무배우 부자가구	32	10
맞벌이가구	48	2
유배우 홑벌이가구	36	4

자료: 2007년 1/4분기부터 2008년 2/4분기까지의 연결패널자료.

## V.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정하는 전체 법정 보호 모자가구수는 2007년 기준 11만 8천 가구이다.<sup>5)</sup> 법정 보호 모자가구는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경우이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포괄하는 가구는 6만 가구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는 가구는 5만 8천 가구이다.

법정 지원은 크게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으로 나뉜다. 만 10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2009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49만 원이며 가구원이 1인 추가될 경우 34만 원 또는 25만 원이 증가한다. 이에 비교할 때 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은 대략 OECD의 상대빈곤선과 유사한데 130%와 150% 사이의 무배우 모자가구가 1만 1천 8백 가구 정도 존재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해 소득지원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보충적 급여 방식이 아닌 정책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노동시장 참가 유인을 낮추지 않고 이들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업한 일자리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무배우 모자가구 취업자의 경우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차이는 거의 없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숙련수준이 낮은 것 때문으로 보인다. 고강도 훈련을 통해 숙련수준을

5)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조.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만약 비교적 장기간 집약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 기간 중에 충분한 생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LI**